

목 차

사 업 보 고 서	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
I. 회사의 개요	3
1. 회사의 개요	3
2. 회사의 연혁	5
3. 자본금 변동사항	6
4. 주식의 총수 등	7
5. 정관에 관한 사항	8
II. 사업의 내용	9
1. 사업의 개요	9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32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32
4. 매출 및 수주상황	32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32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32
7. 기타 참고사항	33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4
1. 요약재무정보	34
2. 연결재무제표	35
3. 연결재무제표 주식	35
4. 재무제표	35
5. 재무제표 주식	37
6. 배당에 관한 사항	55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56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56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61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63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64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66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66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67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68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68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75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78
VII. 주주에 관한 사항	80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84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84
2. 임원의 보수 등	87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90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91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2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9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9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94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97
XII. 상세표	100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100
2. 계열회사 현황(상세)	100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100
【 전문가의 확인 】	100
1. 전문가의 확인	100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100

사 업 보 고 서

(제 3 기)

사업연도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3 월 23 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주식회사 누보

(구,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창균, 이경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5-102(서둔동, 서울대학교농생
명과학창업지원센터)

(전 화)031-295-6189

(홈페이지) <http://www.nousb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지선필

(전 화)031-295-6189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 등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 03. 23

주식회사 누보

대표이사 김 창 균 (서명)

신고업무 담당이사 지 선 필 (서명)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 주식회사 누보는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21년 7월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2월 17일(합병등기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방법으로 상장법인인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누보(피합병회사)를 1:258.2611494 비율로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누보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2021년 12월 31일)은 합병등기일인 2022년 2월 17일 이전이므로 합병 전 상장법인인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합병 등기 후 법률적으로는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존속회사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회사 누보가 실질적 합병회사가 됨으로서 2022년 1분기보고서 부터는 주식회사 누보를 기준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분	자회사	사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는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입니다. 영문으로는 'Daishin Balance No.7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약호 'Daishin Balance NO.7 SPAC')라 표기

합니다.

다. 설립일자

- 설립일자 : 2019년 07월 24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전 화 번 호 : (02) 769-3635, (02)769-2162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비고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 상장	2019년 10월 11일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19년 07월 24일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당사는 설립일 이후 지점, 영업소, 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 변경 또는 경영진 1/3 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9년 07월 24일	(주)대원	200,000	97.56	발기주주	공모 전
2019년 10월 14일	신한금융투자(주)	212,292	4.08	공모 후 지분율 변동	공모 후
2020년 12월 31일	메리츠증권(주)	242,833	4.67	장내매도	-

2021년 12월 31일	미래에셋증권(주)	230,000	4.42	장내매수	-
---------------	-----------	---------	------	------	---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주)누보(이하 "피합병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비료, 유기농업자재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CRF 및 기능성 비료를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재무적 안정성 제고, 대외신뢰도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자금조달능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SPAC 합병을 통한 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양회사는 2021년 7월 20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동 일자로 합병계약(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 1 : 258.2611494)을 체결하였고, 2022년 1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2022년 3월 4일 합병신주 상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주)누보에서 영위하는 사업부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주)는 존속하고 (주)누보는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누보가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9년 07월 24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주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기말 (2021년말)	제2기 (2020년말)	제1기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205,000	5,205,000	5,205,000
	액면금액	100	100	100
	자본금	520,500,000	520,500,000	520,5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520,500,000	520,500,000	520,50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205,000	-	5,205,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 - Ⅲ)		5,205,000	-	5,205,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 - Ⅴ)		5,205,000	-	5,205,00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년 01월 14일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제1조(상호), 제2조(목적),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변경 등	합병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 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 일정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 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당사는 2021년 07월 20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1년 11월 25일에 코스닥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01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금번 합병 건을 승인받았습니다.

(합병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결의일	2021년 07월 20일

합병계약일	2021년 07월 20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1년 11월 29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21년 12월 14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21년 12월 15일
	2021년 12월 23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21년 12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21년 12월 30일
	2022년 01월 13일
주주총회일	2022년 01월 1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2월 0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2년 01월 15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2년 01월 15일
	2022년 02월 15일
합병기일	2022년 02월 16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년 02월 17일
합병등기에정일	2022년 02월 17일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22년 03월 04일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절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선정 배경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 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합병대상으로 특정업종을 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관련 사항]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하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의료기기
3. 2차 전지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디지털 콘텐츠·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9. 로봇 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고부가 식품산업
12. 자동차 부품제조

13. IT 및 반도체

14.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산업환경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생성하며 미래성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환경 변화 요인]

Political	Economical
- 정부 영향력 확대 및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 지역 블록화, 규제 강화 -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 • 중국 등 신흥국 영향력 증가	-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및 불균형 심화 - 과잉생산 및 과잉설비에 따른 구조 조정 압력 - 환경 및 자원 이슈 부각 • 재생 및 대체 에너지 수요와 자원확보 증가
Social	Technological
- 인구구조의 변화 • 다양한 계층 및 자아실현 욕구 증가 - 가치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 • 삶의 질, 다양성, 소통, 무형가치 등	- 기술혁신의 고도화 및 가속화 •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및 유비쿼터스화 -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산업구조 변화 • 신 비즈니스 모델, Total Solution 추구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속에서 Silver & Well-Being, Green, New Energy, Soft Power, IT Convergence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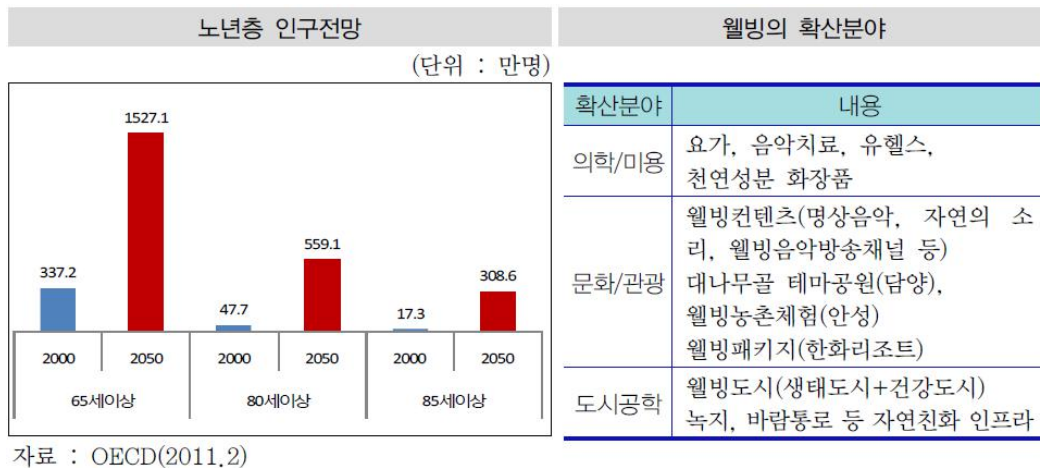
(가) Silver & Well-Being

노년층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버(Silver)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국내 노령인구(65세 이상) 수는 2000년 대비 4.5배 증가한 1500만명에 육박할 전망되며, 이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실버산업의 규모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3% 성장하여 2020년에는 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웰빙(Well-Being) 트렌드가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며 심화 및 발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사회대안운동 속에서 시작한 웰빙 개념이 국내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되면서 크게 대두되었으며, 웰빙문화가 산업트렌드로 확산되면서 웰빙형 신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웰빙식음료, 웰빙가전, 웰빙섬유, 웰빙건설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외에도 문화, 관광, 의학, 도시공학 및 행정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노년층 인구전망 및 웰빙의 확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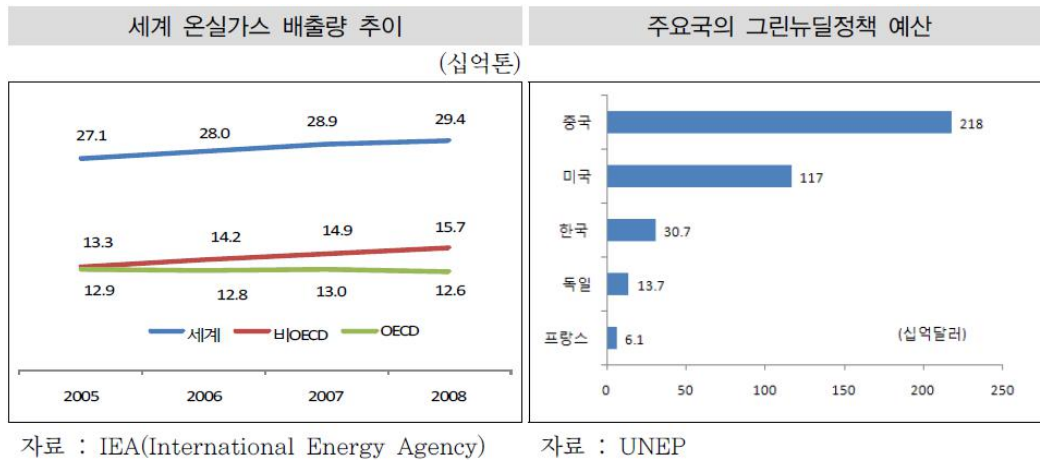


(나) Green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사회문제 대두,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산업(Green화)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지구평균기온(14.52도)은 20세기 평균기온(13.9도) 보다 0.62도 상승하였으며,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OECD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대비 1.2% 증가한 126억톤에 그친 반면, 비OECD국가는 26% 증가하여 격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5) 분야의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기부양 및 장기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전기차, LED 등 녹색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며, UN 산하기관인 UNEP에 따르면 G20 국가의 총 경기부양 예산액 3.1조 달러 중 약 15%가 녹색분야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및 주요국의 그린뉴딜정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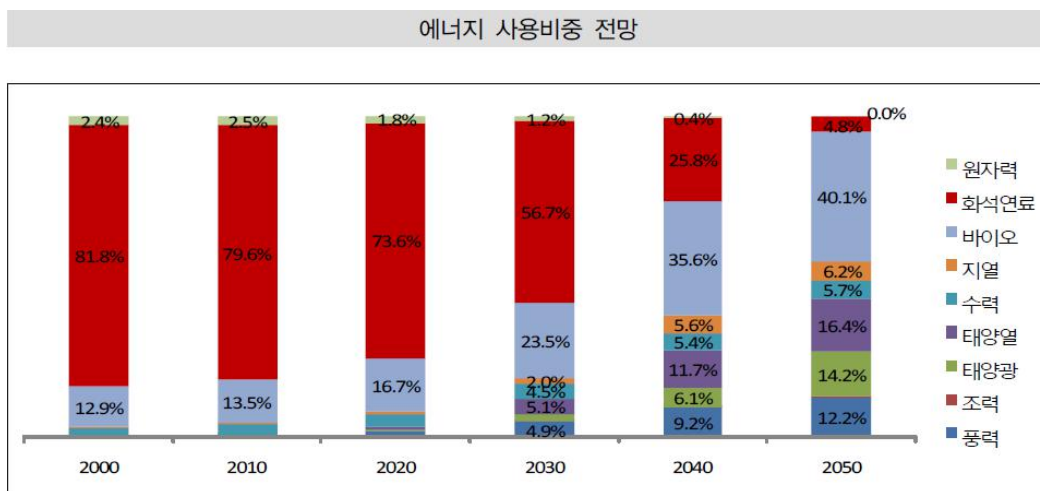


(다) New Energy

화석연료 고갈 우려와 에너지 가격변동성 확대, 각국의 정부지원 등으로 대체에너지(New Energy)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정책 시행 중이며, 에너지효율 및 첨단부품소재관련 기술개발로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상용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태양열, 태양광을 필두로 한 대체에너지의 시장이 확대되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및 지열, 수력에너지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2050년에 이르면 화석연료의 비중이 5%에 그칠 전망입니다.

[에너지 사용비중 전망]



자료 : The Energy Report: 100% Renewable Energy by 2050, WWF & Ecofys(2011.2)

(라) Soft Power

Soft Power는 감성, 문화, 지식 등을 가공, 판매하거나 타산업 생산활동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정의되며 표준산업분류상 SW 및 사업서비스, 정보통신, 문화 및 오락서비스,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성과 문화중심의 소비자 수요변화에 따라 하드웨어 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유망분야로 급부상할 전망되며,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존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 이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면에서 타 업종 대비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선진국 대비 국내 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콘텐츠, 관광 및 문화 산업분야의 경쟁력 부족으로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의 성장세의 유지,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의한 모바일 산업의 성장세로 볼 때 Soft Power 분야는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마) IT Convergence

이종산업간 컨버전스(Convergence) 확산에 따라 산업 구조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신과 금융, 의료와 바이오, IT와 주력 제조업 등 이종산업간 컨버전스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산업영역 창출이 창출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속에서 산업간 컨버전스가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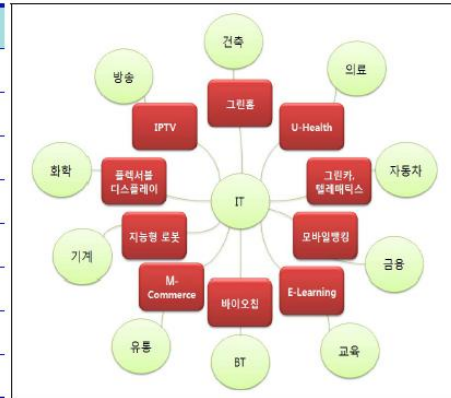
이종산업의 기술,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업계간의 ‘융합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향상에 따라 IT산업과 기타제조업서비스업과의 융합이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 등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지능화 및 자동차, 무인화된 시스템이 요구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IT 및 소프트웨어 비중을 높인 것에 기인합니다. 향후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산업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아 잠재적 합병대상으로 유망한 산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산업군을 중점적으로 합병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합병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전체생산 대비 융합제품 생산비중 전망 및 IT-Convergence 사례]

(%)	2010	2015	2020
자동차	1.1	4.4	16.9
조선	15.0	30.0	50.0
기계	13.0	25.0	40.0
철강	4.3	5.0	8.2
화학	12.0	25.0	35.0
섬유	15.0	30.0	40.0
디스플레이	50.0	70.0	90.0
휴대폰	19.1	42.4	61.3

자료 : 산업연구원(20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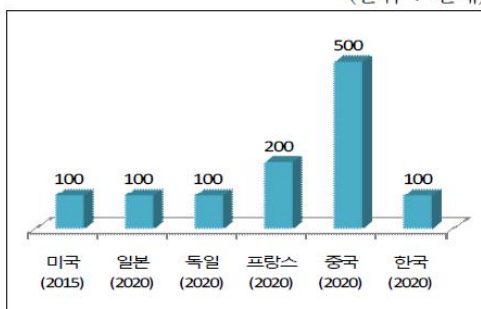
(바) 그린카

국내외 지원정책과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자원고갈 및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 국내외 정부는 그린카 산업목표 및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3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의 4~1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주요 국가별 그린카 보급목표 및 주요기관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전망]

주요 국가별 그린카 보급목표

(단위 : 만대)



주 : 미국(PHEV, 누적) 일본(PHEV+EV, 신차), 프랑스, 독일, 한국(EV, 누적), 중국(PHEV+EV, 누적) 기준

주요기관의 글로벌 전기차(EV) 시장전망

기관	2020년 전기차 시장전망
롤랜드버거	시장점유율 10% 전망(PHEV포함)
JP모건	시장점유율 14% 전망
노무라	시장점유율 최대 4% 전망
AT커니	시장점유율 10% 전망(PHEV포함)
산업연구원	시장점유율 6~7% 전망

배터리, IT 기술력과 중소형차 경쟁력이 국내업체의 강점입니다. 그린카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소재 기술개발과 충전인프라 확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부품업체와의 공동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최근 신흥국 업체의 추격에 대한 대응도 시급합니다. 또한 그린카 supply chain에 위치하는 중소 유망기업 발굴과 파생되는 서비스,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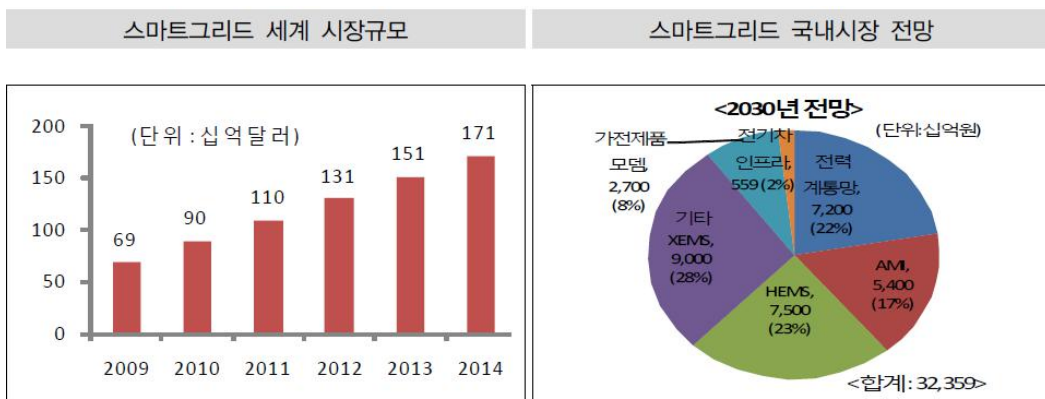
[국내 그린카 산업의 SWOT 분석 및 그린카 산업 Value Chain]



(사) 스마트그리드 시장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하며 2014년 약 \$1,700억 시장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시장은 '12년 4,344억원에서 '30년 32조원으로 성장이 전망되며, 전력계통망(발전소, 변전소, 송전선을 포함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전기적인 연계),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수요/공급자간 전력사용 정보 등의 전달을 가능케 하는 기술), EMS(Energy Management System : 전력계통을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시장이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규모 및 스마트그리드 국내시장 전망]



자료 : 지식경제부(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2010.1), 현대경제연구원(2011.3)

국내는 AMI, EMS 등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나 DR(Demand Response : 전력 피크 시 전력 사용을 축소시키는 기술) 전기자동차 설비 등의 기술수준은 열위인 상황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GE와 Google, Alstom과 Microsoft의 연합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력망, 통신, IT업체들의 통합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의 SWOT분석 및 스마트그리드산업 Value Chain]

국내 스마트그리드산업의 SWOT분석		스마트그리드산업 VALUE CHAIN				
Strength	Weakness	전력 계통	통신 H/W	통신 S/W	솔루션	연관 부문
세계적 수준의 전력·통신 인프라 구비 우수한 유관 산업분야 보유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로 경쟁력 부족					
Opportunity	Threat	발전소 변전소 송전소	네트워크 스마트 미터	AMI EMS	DR 실시간 가격제도	전기차 전력저장 신재생 에너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파생분야로 자연스러운 진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전략적 육성·지지 시장규모의 불확실성, 투자비용 산출 곤란					

(아) 지능형 로봇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에 의해 지능형 로봇에 대한 Need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능형 로봇의 주 적용분야인 전문서비스(국방, 감시 등) 및 무인서비스(교육, 의료 등) 로봇시장은 '03년 이후 연평균 38%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제조용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서비스로봇은 통신, 국방, 의료 등과 융합을 통해 응용분야가 계속 확산되어'18년 세계 로봇시장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로봇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불, %)							
연도	2003	2005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03-'08)	2018	연평균증가율 ('08-'18)
로봇 계	4,451	7,471	8,071	9,365	16.0	100,000	26.7
제조용	3,817	5,296	5,839	6,226	10.3	14,500	8.8
서비스용	634	2,174	2,232	3,139	37.7	85,500	39.2
(비중)	(14.2)	(29.1)	(27.7)	(33.5)		(85.5)	

자료 : IFR, World Robotics 2009, '09,10 및 지식경제부, 서비스로봇 산업 발전 전략, '10.12.9

앞선 IT인프라, 정형화된 공동주택 생활환경 등의 여건이 국내업계의 강점이나, 원천기술부품 개발, 수요확산을 위한 업계와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Needs에 부합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거나 로봇 외의 분야에서 현금창출력을 겸비한 기업이 유망합니다.

[국내 지능형 로봇 산업의 SWOT분석 및 국내 로봇기업 현황]

국내 지능형 로봇 산업의 SWOT분석		국내 로봇기업 현황 ^{주)}		
Strength	Weakness	구분	업체수(비중)	로봇관련 매출비중
탁월한 IT 기술 및 인프라 보유, 로봇 도입에 유리한 아파트 주거환경	원천 및 부품 기술이 선진국 대비 열위, 로봇 인프라 및 응용관련 핵심 전문인력 부족	제조용 로봇	95(36.5%)	1.8%
Opportunity	Threat	전문서비스용 로봇	32(12.3%)	0.4%
실버산업 성장,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성 확대,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용 로봇 수요 증대	선진국의 기초·요소 기술에 기반한 기술 및 제품개발 증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피	개인서비스용 로봇	48(18.5%)	0.2%
		로봇 부품, 부분품	85(32.7%)	2.8%
		합계	260(100.0%)	1.1%

주 : '00년 이후 설립 비중 60.4%, 매출액 50억원 미만 비중 85.8%

자료 : 지정부, 2010 로봇산업 실태조사('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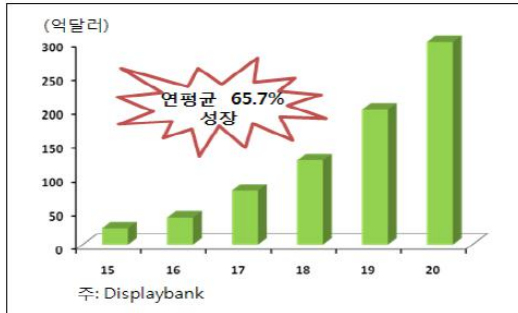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융합을 위한 적용성과 휴대편의성 증대에 필요한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유연성은 IT기기의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용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관, 전극 및 신축성 화학 신소재와 IT산업의 융합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5년에 약 24억달러에서 2020년에 약 300억 달러로 연평균 65.7% 증가할 전망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전망 및 국가별 주요 개발 기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국가별 주요 개발 기업



기업	개발현황
Merck	액정과 같은 독점물질 개발을 위하여 유기 반도체 기술에 투자
Eastman-Kodak	photographic 기술과 재료를 바탕으로 플렉서블 LCD 개발중
제일모직	플렉서블 LCD 기판소재를 개발중

높은 하드웨어 기술력, 정부차원의 육성계획은 국내업체의 강점으로,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IT하드웨어 기술력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정부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W.P.M 10대과제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화학소재와 IT산업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육성의 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SWOT분석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Value Chain]

국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SWOT 분석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VALUE CHAIN

Strength	Weakness
-높은 하드웨어 기술력 -정부의 육성지지	-단기성과 위주의 문화 -소재부분 기술력 부족
Opportunity	Threat
-모바일 IT기기 사용확대 -선점한 기업이 없어 제로 베이스에서 경쟁가능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일본, 미국 등과의 경쟁

소재	부품	장비	패널
-기판소재 -전극소재 -필름소재	-플라스틱 기판 -전극필름	-제조장비 -각소재별 제조설비	-완제품 생산

(차) 물산업

세계 물 산업은 연평균 5.0% 성장하며 2025년 \$8,650억 시장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인구증가, 도시화의 진전, Well-being 트렌드 확산, 신흥국의 경제성장, 수질오염 확산 등이 세계 물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에서는 해외 물산업 진출, 해수담수화 상용화 기술 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중점으로 물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시장 규모]

사업내용 (단위 : US\$억, %)	시장규모							관련업종
	2007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설비	운영	계	설비	운영	계		
상수	66	106	172	190	198	388	4.6	건설, 엔지니어링, 부품제조, 배관파이프 제조, 운영/관리서비스 등
하수	75	78	153	211	144	355	4.8	
공업용수	22	2	24	53	4	57	4.9	
해수 담수화	5	7	12	10	34	44	7.5	
재이용수	1	—	1	21	—	21	18.4	
계	169	193	362	485	380	865	5.0	

자료 : 블루골드 물산업, 유망 사업분야 및 진출전략('10. 6, 한국무역협회)

국내기업은 해수 담수화설비 및 상하수도 플랜트 댐건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해수담수화 설비 분야 세계 1위), 웅진케미칼(수처리용 분리막 생산 설비), 삼성엔지니어링(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중심으로 설비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Veolia, Suez 등 Global 물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운영·관리 서비스 부문(물산업 중 53%차지)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비분야의 Supply Chain형성을 위한 중소 유망기업 발굴과 수처리 운영·관리서비스 전문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습니다.

[국내 물산업의 SWOT분석 및 물산업 Value Chain]

국내 물산업의 SWOT분석		물산업 VALUE CHAIN			
Strength	Weakness	취수	공급	재생	
플랜트/건설 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 우수 물 관련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기반 성숙	자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물 전문기업 부재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제로 경쟁력 부족	댐 등 수자원 취수 관련 부품, 송/배관부품 담수화 설비 부품	정수처리부품 및 시스템 배관파이프	하수처리부품 및 시스템 배관파이프	제조
Opportunity	Threat	건설			
구제역, 방사능 오염우려 등 국내 수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 증대 중국 등 주변국의 물시장 규모 급성장	대형 다국적기업의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 Veolia, Suez 등 글로벌 선도업체 국내 진입	댐 건설 송/배관 건설 담수화 설비 건설	정수처리시설 배관시설	하수처리시설 배관시설	
		운영	수자원 관리	정수처리장 운영 및 정수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리

(카) U-health 시장

U-health는 Ubiquitous healthcare의 약자로 IT와 보건의료 서비스가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형성중인 유헬스 시장은 '09년 기준 1,431억불 규모에서 '18년에는 4,987억불로 전망됩니다.(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 보고서) 의료기술과 BIT, 유전정보 등을 접목한 새로운 헬스케어서비스 등장으로 소비자는 맞춤형 서비스기회 확대를, 기업은

성장동력의 계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이용한 평생건강관리, 맞춤형 단치료기술 및 서비스출현은 고령화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흐름으로, 의료·IT의 융합과 고령화,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U-health 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 U-Health 시장 전망]

< 세계 u-Health 시장 전망 >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8년	연평균성장률
u-Medical 시장	304.8	418.1	532.9	705.0	1,238	15.0%
u-Silver 시장	199.1	247.0	288.7	347.0	448	9.7%
u-Wellness 시장	553.9	766.3	1,071.8	1,487.7	3,301	17.9%
합 계	1,057.8	1,431.4	1,893.4	2,539.7	4,987	15.7%

세계 U-health 시장 확대 예상에 따라 GE, 필립스, IBM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의료산업 진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제도적 문제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우수한 IT인프라 감안시 향후 U-health 서비스 주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health산업은 의료기기, 통신, 통신장비, SI, 의료업 등 다양한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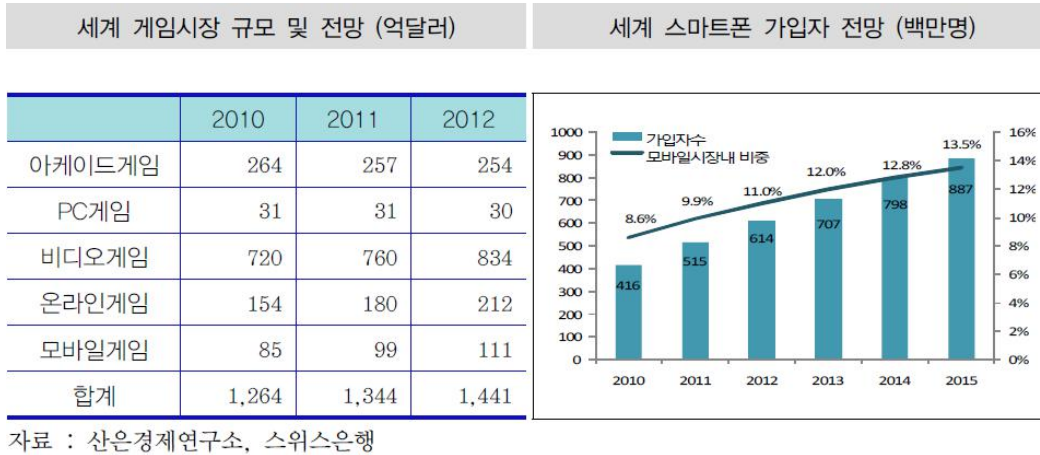
[국내 U-Health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국내 U-health산업의 SWOT분석		U-health산업의 VALUE CHAIN				
Strength	Weakness	Device	Solution			Service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구비 우수한 유관 산업분야 보유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선진국 대비 의료인력 부족	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	통신	통신 장비	SI	병원/ 의료계
Opportunity	Threat					
고령화, 웰빙추세 강화 중국의 의료시장 확대	의료법 개정 지연 등 제도적 리스크					

(타) 게임산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시장의 확대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게임장 운영, 아이템 판매 등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신흥국의 인터넷 환경개선 등으로 세계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 전망 및 세계 스마트폰 가입자 전망]



국내업체는 인터넷 환경, 온라인 게임분야의 높은 경쟁력으로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의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환경 변화(셋다운제, 게임중독기금 등)에 민감하고 진입장벽이 낮아 적극적인 인력양성과 경영환경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업체의 점유율이 한국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게임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파) E-Paper

종이인쇄를 보듯 편한 읽기를 추구하는 Display인 전자종이는 출판 문화산업의 소프화를 지원하는 핵심입니다. e-Book, Tablet PC 등 e-Reader 보급의 확대와 함께 종이 인쇄물 시장을 대체하면서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아직은 시장 형성기에 불과하나 현재의 성장 속도는 2010년대 후반 세계 시장규모 1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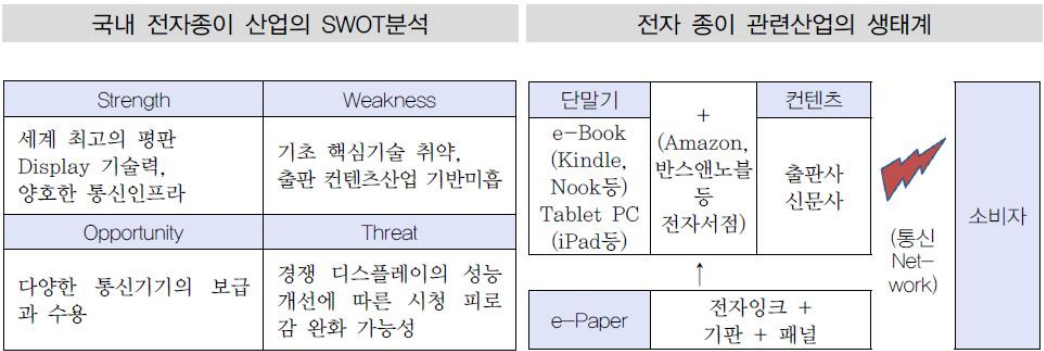
Ink사의 전기영동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컬러 다양화와 속도개선이 과제입니다.

[E-Paper 세계시장 전망 및 분야별 주요 참여업체]



국내는 Display 패널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전자잉크와 기판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패널기술 응용과 연계한 시너지 차원의 기초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출판 콘텐츠 산업 환경을 디지털 생태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컬러화와 화면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핵심기술, 시너지가 가능한 협력 형태의 사업 모형 등이 유망합니다.

[국내 전자종이 산업의 SWOT분석 및 전자 종이 관련산업의 생태계]



(하) 2차 전지 시장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뜻하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은 그린카, 모바일 IT기기의 휴대형 청정에너지원으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소형IT용 전지, 중대형 전지로 분류되는 ESS 및 전기차용 전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미 성

속기에 접어든 노트북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 소형전지는 성장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소형IT 전지 시장규모는 약 116억 달러로 2018년까지 시장규모 150억 달러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Global LIB Market status and forecast report, 2014)

중대형 전지의 ESS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전지 장치로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유럽과 미국의 연비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강력한 수요처로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용 소형 전지는 성장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와 ESS용 중/대형 전지는 2020년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2차전지시장에서 입증된 높은 기술력과 전방산업인 국내자동차, IT기업들의 경쟁력은 국내업체의 강점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부분의 낮은 자립도와 원료인 리튬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은 과제입니다. 소재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와 자동차, IT시장 진출과 연계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산업의 SWOT분석 및 Value Chain]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59조 (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또는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

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정관 제60조에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정관 상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사항]

정관 제60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모 전 주주는 주식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은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7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등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 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을 위한 유망 중점 산업군은 정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규모에 있어 합병대상회사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향후 성장성이 높아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량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의료기기
3. 2차전지
4. LED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디지털 콘텐츠·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9. 로봇 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고부가 식품산업
12. 자동차 부품제조
13. IT 및 반도체
14.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8조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

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 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타 법인과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제 5 조 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 및 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과 총칭하여 “공모전 발행 주식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신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발기인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신증권이 소유한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전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수
-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
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
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
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
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만,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
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
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
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또는 M&A 자문기관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추진
과정중에 M&A 자문과 관련하여 대신증권(주)와 금융자문계약을 통한 기업실사 및 합병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
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병자문수수료	166	M&A 자문기관
법률 자문 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 자문 수수료	50	회계법인
합 계	266	-

주1)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합병자문수수료의 경우 합병자문수수료 166백만원은 기업실사비용 66백만원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

1-2. 합병추진 운영 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금액

16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대하여 제한하였습니다.

[자금운영규정에 따른 합병추진 운영비용 사항]

제3조 (공모예치자금에 대한 운영)

-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 제2항, 그리고 회사 정관 제57조에 따라 공모예치자금은 증권금융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한다.
- ② 본조 제1항의 예치 또는 신탁의 결정, 예치기관 또는 신탁업자의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매출 및 수주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위험관리 체계 및 파생거래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해당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보고서를 정정할 예정입니다.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제3(당)기 (2021. 12. 31)	제2(전)기 (2020. 12. 31)	제1(전전)기 (2020. 12. 31)
감사인(감사의견)	서우회계법인(적정)	서우회계법인(적정)	서우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	11,542,453,098	1,406,956,761	1,422,871,623
비유동자산	-	10,061,276,156	10,000,000,000
자산총계	11,542,453,098	11,468,232,917	11,422,871,623
유동부채	152,998,250	245,590	108,040
비유동부채	1,191,672,257	1,143,044,089	1,076,445,166
부채 총계	1,344,670,507	1,143,289,679	1,076,553,206
자본금	520,500,000	520,500,000	520,500,000
자본잉여금	9,525,480,000	9,525,480,000	9,525,480,000
기타자본요소	341,666,844	341,666,844	341,666,844
이익잉여금(결손금)	(189,864,253)	(62,703,606)	(41,328,427)
자본 총계	10,197,782,591	10,324,943,238	10,346,318,417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223,377,820	37,043,755	30,095,147
영업이익(손실)	(223,377,820)	(37,043,755)	(30,095,147)
금융수익	144,845,341	82,916,009	13,251,970
금융비용	84,493,992	78,287,772	31,961,96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63,026,471)	(32,415,518)	(48,805,143)
법인세비용(수익)	(35,865,824)	(11,040,339)	(7,476,716)
당기순이익(손실)	(127,160,647)	(21,375,179)	(41,328,427)
기본주당손실	(24)	(4)	(14)
희석주당손실	(24)	(4)	(14)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3 기 2021.12.31 현재

제 2 기 2020.12.31 현재

제 2 기초 2020.01.01 현재

(단위 : 원)

	제 3 기	제 2 기	제 2 기초
자산			
유동자산	11,542,453,098	1,406,956,761	1,422,871,623
현금및현금성자산	325,661,185	373,601,434	410,089,114
단기금융상품	11,164,656,114	1,000,000,000	1,000,000,000
미수수익	31,111,309	22,788,977	12,697,069
당기법인세자산	21,024,490	10,566,350	85,440
비유동자산	0	10,061,276,156	10,000,000,000
장기금융상품	0	10,061,276,156	10,000,000,000
자산총계	11,542,453,098	11,468,232,917	11,422,871,623
부채			
유동부채	152,998,250	245,590	108,040
미지급금	152,915,000	165,000	28,000
예수금	83,250	80,590	80,040
비유동부채	1,191,672,257	1,143,044,089	1,076,445,166
전환사채	1,150,336,075	1,065,842,083	987,554,311
이연법인세부채	41,336,182	77,202,006	88,890,855
부채총계	1,344,670,507	1,143,289,679	1,076,553,206
자본			
자본금	520,500,000	520,500,000	520,500,000
보통주자본금	520,500,000	520,500,000	520,500,000
자본잉여금	9,525,480,000	9,525,480,000	9,525,480,000
주식발행초과금	9,525,480,000	9,525,480,000	9,525,480,000
기타자본구성요소	341,666,844	341,666,844	341,666,844

전환권대가	341,666,844	341,666,844	341,666,844
이익잉여금(결손금)	(189,864,253)	(62,703,606)	(41,328,427)
미처리결손금	(189,864,253)	(62,703,606)	(41,328,427)
자본총계	10,197,782,591	10,324,943,238	10,346,318,417
자본과부채총계	11,542,453,098	11,468,232,917	11,422,871,623

포괄손익계산서

제 3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단위 : 원)

	제 3 기	제 2 기
영업수익	0	0
영업비용	223,377,820	37,043,755
판매비와관리비	223,377,820	37,043,755
영업이익(손실)	(223,377,820)	(37,043,755)
금융수익	144,845,341	82,916,009
금융비용	84,493,992	78,287,7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63,026,471)	(32,415,518)
법인세비용	(35,865,824)	(11,040,339)
당기순이익(손실)	(127,160,647)	(21,375,179)
기타포괄손익	0	0
총포괄이익(손실)	(127,160,647)	(21,375,17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4)	(4)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4)	(4)

자본변동표

제 3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요소	결손금	자본 합계
2020.01.01 (기초자본)	520,500,000	9,525,480,000	341,666,844	(41,328,427)	10,346,318,41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0	0	0	(21,375,179)	(21,375,179)
2020.12.31 (기말자본)	520,500,000	9,525,480,000	341,666,844	(62,703,606)	10,324,943,238
2021.01.01 (기초자본)	520,500,000	9,525,480,000	341,666,844	(62,703,606)	10,324,943,23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0	0	0	(127,160,647)	(127,160,647)
2021.12.31 (기말자본)	520,500,000	9,525,480,000	341,666,844	(189,864,253)	10,197,782,591

현금흐름표

제 3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단위 : 원)

	제 3 기	제 2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5,439,709	24,788,476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70,625,160)	(36,906,205)
당기순이익(손실)	(127,160,647)	(21,375,179)
비현금항목의 조정	(96,217,173)	(15,668,576)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152,752,660	137,550
법인세납부(환급)	(10,458,140)	(11,129,420)
이자의 수취	136,523,009	72,824,10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379,958)	(61,276,15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03,379,958)	(61,276,156)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03,379,958)	(61,276,15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47,940,249)	(36,487,680)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73,601,434	410,089,114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5,661,185	373,601,434

5. 재무제표 주석

제 3(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9년 7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 10월 11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미래에셋증권	230,000주	4.42%
(주)대원	200,000주	3.84%
대신증권(주)	5,000주	0.10%
기타	4,770,000주	91.64%
합 계	5,205,000주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 3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5)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로 변동에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 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

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⑦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⑧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

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3. 유의적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5)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의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계상합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7)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금융상품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이자수익은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과세소득을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

당사는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②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25,661,185	373,601,434
단기금융상품	11,164,656,114	1,000,000,000
미수수익	31,111,309	22,788,977
장기금융상품	-	10,061,276,156
합 계	11,521,428,608	11,457,666,567

③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현금유출액을 분석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1년 이하	1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미지급금	152,915,000	-	-	-

전환사채(*)	-	-	1,395,000,000	-
합 계	152,915,000	-	1,395,000,000	-

(*) 해당 금액은 만기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1년 이하	1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미지급금	165,000	-	-	-
전환사채(*)	-	-	-	1,395,000,000
합 계	165,000	-	-	1,395,000,000

(*) 해당 금액은 만기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2)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제시하는 자본 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있습니다 . 이 자본 적정성 기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사는 이 기준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25,661,185	373,601,434
단기금융상품	11,164,656,114	1,000,000,000
미수수익	31,111,309	22,788,977
장기금융상품	-	10,061,276,156
합 계	11,521,428,608	11,457,666,567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미지급금	152,915,000	165,000
전환사채	1,150,336,075	1,065,842,083
합 계	1,303,251,075	1,066,007,083

(3) 당기 및 전기 중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금융순손익
이자수익(비용)	144,845,341	(84,493,992)	60,351,349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금융순손익
이자수익(비용)	82,916,009	(78,287,772)	4,628,237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기업자유예금	(주)국민은행	325,661,185	373,601,434

7. 사용제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제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주석8)	10,164,656,114	-
장기금융상품(주석9)	-	10,061,276,156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주)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융기관	만기일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주)국민은행	2022.03.18	1,000,000,000	1,000,000,000
공모자금신탁	(주)국민은행	2022.10.07	10,164,656,114	-
합 계			11,164,656,114	1,000,000,000

9. 장기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예치기관	만기일	당기말	전기말
공모자금신탁	(주)국민은행	2022.10.07	-	10,061,276,156

(*) 당사는 상기 장기금융상품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여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0. 전환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명 칭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1,395,000,000	1,395,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64,624)	(1,028,684)
	전환권조정	(243,899,301)	(328,129,233)
합 계		1,150,336,075	1,065,842,083

(2)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채의 명칭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395,000,000원		
발행일	2019년 7월 30일	만기일	2024년 7월 30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2019년 8월 30일부터 2024년 7월 29일까지
인수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1,395,000,000원

11.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수	500,000,000 주	500,000,000 주
발행주식수	5,205,000 주	5,205,000 주
주당액면가액	100	100
자본금	520,500,000	520,500,000

(2) 당기 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일 자	주식수 (단위: 주)	보통주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합 계
설립자본	2019.07.24	205,000	20,500,000	182,680,000	203,180,000
주식발행	2019.10.08	5,000,000	500,000,000	9,342,800,000	9,842,800,000
합 계		5,205,000	520,500,000	9,525,480,000	10,045,980,000

12. 결손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처리결손금	(189,864,253)	(62,703,606)

(2) 당기 및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3(당)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2(전)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에정일	2022년 3월 31일	처리확정일	2021년 3월 23일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원)

구 분	제 3(당) 기		제 2(전) 기	
I. 미처리결손금		(189,864,253)		(62,703,606)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62,703,606)		(41,328,427)	
2. 당기순이익(손실)	(127,160,647)		(21,375,179)	
II. 결손금처리액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89,864,253)		(62,703,606)

13.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급여	19,200,000	19,200,000
복리후생비	949,100	871,360
세금과공과	52,320	-
통신비	743,970	243,570
도서인쇄비	2,480,500	440,000
교육훈련비	260,000	420,000
지급수수료	198,371,930	14,878,825
광고선전비	1,320,000	990,000
합 계	223,377,820	37,043,755

14.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기 및 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144,845,341	82,916,009
금융비용		
이자비용	84,493,992	78,287,772

15.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	-----	-----

법인세부담액	-	648,509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35,865,824)	(11,688,848)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
법인세수익	(35,865,824)	(11,040,339)

(2)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없습니다.

(3)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3,026,471)	(32,415,518)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11%)	(17,932,911)	(3,565,707)
조정사항		
기타세율차이 등	(17,932,911)	(7,474,632)
법인세수익	(35,865,822)	(11,040,339)

(4) 당기 및 전기의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전환권조정	(22,788,977)	(8,322,332)	(31,111,309)	(5,013,575)	(1,830,913)	(6,844,488)
미수수익	(328,129,233)	84,229,932	(243,899,301)	(72,188,431)	18,530,585	(53,657,846)
세무상결손금	-	87,118,871	87,118,871	-	19,166,152	19,166,152
합 계	(350,918,210)	163,026,471	(187,891,739)	(77,202,006)	35,865,824	(41,336,182)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전환권조정	(406,172,337)	78,043,104	(328,129,233)	(89,357,915)	17,169,483	(72,188,431)
미수수익	(12,697,069)	(10,091,908)	(22,788,977)	(2,793,355)	(2,220,220)	(5,013,575)
세무상결손금	29,640,134	(29,640,134)	-	3,260,415	(3,260,415)	-
합 계	(389,229,272)	38,311,062	(350,918,210)	(88,890,855)	11,688,848	(77,202,006)

당사는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며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16.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127,160,647)	(21,375,17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205,000주	5,205,000 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24)	(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주)

구 분	일자	주식수	누적일수	적 수
기초	2021.01.01	5,205,000	365 일	1,899,825,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205,000

② 전기

(단위: 주)

구 분	일자	주식수	누적일수	적 수
기초	2020.01.01	5,205,000	366 일	1,905,03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205,000

(2) 희석주당순이익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 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7. 현금흐름표에 따른 주식사항

(1) 당기 및 전기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비현금항목의 조정:		
이자비용	84,493,992	78,287,772
이자수익	(144,845,341)	(82,916,009)
법인세수익	(35,865,824)	(11,040,339)
소 계	(96,217,173)	(15,668,576)
순운전자본의 변동: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52,750,000	137,000
예수금의 증가(감소)	2,660	550
소 계	152,752,660	137,550

(2)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장기금융상품의 유동성 대체	10,164,656,114	-

18.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기타특수관계자	대신증권(주)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① 당기

(단위: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이자비용	인수수료
기타특수관계자	대신증권(주)	84,493,992	150,000,000

② 전기

(단위: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이자비용
기타특수관계자	대신증권(주)	78,287,772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의 주요 잔액

(단위: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당기말		전기말

		전환사채	미지급금	전환사채
기타특수관계자	대신증권(주)	1,065,842,083	150,000,000	1,065,842,083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급여	19,200,000	19,200,000

1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당사는 당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주)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300,000천원 또는 총 공모금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총 인수수수료 중 50%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50%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성공한 경우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가 기 지급한 인수수수료 150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20.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1년 7월 20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해 주식회사 누보와 1: 258.2611494의 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합병방법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누보를 흡수합병			
합병비율		1: 258.2611494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26,481,323주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누보			
	주요사업	비료 제조 및 도소매, 농약 제조 및 판매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5,035,640,899	자본금	400,000,000
		부채총계	48,770,147,137	매출액	45,666,703,329
		자본총계	6,265,493,762	당기순이익	549,963,827
	외부감사여부	기관명	다산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주요합병일정	합병 계약일	2021년 07월 20일			
	주주확정 기준일	2021년 12월 14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01월 14일			
	합병기일	2022년 02월 16일			
	합병종료보고공고일	2022년 02월 17일			
	합병등기신청일	2022년 02월 17일			
	합병신주상장일	2022년 03월 04일			

21. 재무제표의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3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기	제2기	제1기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27	-21	-41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나.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9.07.24	-	보통주	205,000	100	1,000	설립자본금주)
2019.10.04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5,000,000	100	2,000	공모

주) 인수자

인수자	주식수	지분율	비고
(주)대원	200,000	97.56%	발기인
대신증권(주)	5,000	2.44%	
합 계	205,000	100.00%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 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 액	전환가능주식 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회차	2019년 07월 30일	2024년 07월 30일	1,395,000,000	기명식 보통주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만기 직전일(2024.07.29)까지	100	1,000	1,395,000,000	1,395,000	-
합 계	-	-	-	1,395,000,000	-	-	-	-	1,395,000,000	1,395,000	-

구 분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9년 07월 30일
만 기 일 자	2024년 07월 30일
권 면 총 액	1,395,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2019년 08월 30일부터 2024년 07월 29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대신증권(주): 9.95억원(71.32%), 에스티캐피탈(주) : 2억원(14.34%), (주)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 2억원(14.34%)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전환가능주식수 : 1,395,000주 전환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만기 직전일(2024.07.29)까지
비 고	1) 인수인 : 대신증권(주), 에스티캐피탈(주), (주)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단,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신증권이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까지 매각 제한

비고	1) 인수인 : 대신증권(주), 에스티캐피탈(주), (주)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대신증권(주), 에스티캐피탈(주), (주)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은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코스닥시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신규상장일까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등간계약서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단,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신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1)

<주주등간계약서>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공모전 발행 주식 및 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과 총칭하여 “공모전 발행 주식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단,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신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대신증권(주), 에스티캐피탈(주), (주)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은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등간계약서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신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주2)

<주주등간계약서>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①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주3)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주)	회사채	사모	2019년 07월 30일	1,395,000	0.00%	-	2024년 07월 30일	미상환	-
합 계	-	-	-	1,395,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1,395,000	-	-	-	-	-
	합계	-	-	1,395,000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코스닥상장 공모	1회차	2019년 10월 04일	100% 국민은행 신탁	10,000,000,000	100% 국민은행 신탁	10,000,000,000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이사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3기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경영진단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경영진단의 개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습니다.

2.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19년 7월 24일에 설립된 이후 코스닥시장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하여 총 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시킨 상태입니다.

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3(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당)기말		제 2(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11,542,453,098		1,406,956,76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5,6)	325,661,185		373,601,434	
단기금융상품(주석4,5,7,8)	11,164,656,114		1,000,000,000	
미수수익(주석4,5)	31,111,309		22,788,977	
당기법인세자산	21,024,490		10,566,350	
비유동자산		-		10,061,276,156
장기금융상품(주석4,5,7,9)	-		10,061,276,156	
자 산 총 계		11,542,453,098		11,468,232,917
부 채				
유동부채		152,998,250		245,590
미지급금(주석4,5)	152,915,000		165,000	
예수금	83,250		80,590	
비유동부채		1,191,672,257		1,143,044,089
전환사채(주석4,5,10,18)	1,150,336,075		1,065,842,083	
이연법인세부채(주석15)	41,336,182		77,202,006	

부 채 총 계		1,344,670,507		1,143,289,679
자 본				
자본금		520,500,000		520,500,000
보통주자본금(주석11)	520,500,000		520,500,000	
자본잉여금		9,525,480,000		9,525,480,000
주식발행초과금(주석11)	9,525,480,000		9,525,480,000	
기타자본요소		341,666,844		341,666,844
전환권대가	341,666,844		341,666,844	
결손금		(189,864,253)		(62,703,606)
미처리결손금(주석12)	(189,864,253)		(62,703,606)	
자 본 총 계		10,197,782,591		10,324,943,23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542,453,098		11,468,232,917

나.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3(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신밸런스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영업수익		-		-
영업비용		223,377,820		37,043,755
판매비와관리비(주석13,18)	223,377,820		37,043,755	
영업이익(손실)		(223,377,820)		(37,043,755)
금융수익(주석5,14)		144,845,341		82,916,009
금융비용(주석5,14,18)		84,493,992		78,287,7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63,026,471)		(32,415,518)
법인세비용(수익)(주석15)		(35,865,824)		(11,040,339)
당기순이익(손실)		(127,160,647)		(21,375,179)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이익(손실)		(127,160,647)		(21,375,179)
주당손익(주석16)				
기본주당이익(손실)		(24)		(4)
희석주당이익(손실)		(24)		(4)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3기(당기)	서우회계법인	적정	-	-
제2기(전기)	서우회계법인	적정	-	-
제1기(전전기)	서우회계법인	적정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3기(당기)	서우회계법인	외부감사	1,100만원	67	1,100만원	72
제2기(전기)	서우회계법인	외부감사	1,100만원	66	1,100만원	66
제1기(전전기)	서우회계법인	외부감사	750만원	66	750만원	66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기(당기)	-	-	-	-	-
	-	-	-	-	-
제2기(전기)	-	-	-	-	-
	-	-	-	-	-
제1기(전전기)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 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년 11월 26일	회사측: 감사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서면회의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2	2022년 03월 07일	회사측: 감사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서면회의	기말감사 결과 보고 등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권한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권 한	제3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부의사항	제10조(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 예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
-------------	---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제19조 (소집권자)

- ①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회사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고재철 (72.03.22)	99.02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01.09~05.08 삼일회계법인 05.09~현재 대주회계법인 전무이사 16.02~현재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당사의 사외이사 고재철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사외이사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고재철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

(5)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권한사항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절차	제 6 조 (회의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위임사항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자 수: 3명 제적자수 :0명) 전원참석 주1)	사외이사 등의 성명	비고
				고재철(출석률 : 100%)	
				찬반여부	
1	2019.07.24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3/3)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찬성	감사참석
2	2019.07.26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사규 제정의 건 3.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3/3)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찬성	감사참석

3	2019.07.30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3.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4. 감사인 선임의 건 5. 가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6.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3/3) 가결(3/3) 가결(3/3) 가결(3/3)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참석
4	2019.08.27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감사참석
5	2020.02.03	1.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감사참석
6	2020.02.17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7	2021.02.08	1.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감사참석
8	2021.02.22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9	2021.07.20	-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10	2021.11.29	1. 합병변경계약 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3/3)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찬성	감사참석
11	2021.12.06	- 합병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12	2021.12.15	- 합병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13	2021.12.20	- 합병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14	2022.02.09	1. 제3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3/3) 가결(3/3)	찬성 찬성	감사참석
15	2022.03.08	-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3/3)	찬성	감사참석

주1) 참석자수 3명은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을 기준으로 한 현황입니다.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	-	-

(5)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 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현재 1명을 선임(비상근)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 내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 규정 제7조의 2항 및 3항]

제7조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서보민	08.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07.09 제42회 한국공인회계사 합격 07.12~12.08 삼정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12.09~15.03 삼성증권 IB본부 과장 15.04~현재 회계법인 원지 이사 15.10~현재 에스케이제3호스팩 감사 15.10~현재 경기도 빙상연맹 감사 16.09~19.01 대신밸런스제3호스팩 감사 18.08~현재 SK4호스팩 감사	결격요건 없음	-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분	해당여부	비고*
	감사위원회(감사)	
상법 제542조의10	서보민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X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X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9.07.24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2	2019.07.26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사규 제정의 건 3.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
3	2019.07.30	1.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3.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4. 감사인 선임의 건 5.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6.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	-
4	2019.08.27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5	2020.02.03	1.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6	2020.02.17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7	2021.02.08	1.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8	2021.02.22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9	2021.07.20	-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0	2021.11.29	1. 합병변경계약 체결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	-
11	2021.12.06	- 합병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2	2021.12.15	- 합병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3	2021.12.20	- 합병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4	2022.02.09	1. 제3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15	2022.03.16	-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다.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 지원 조직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이 없습니다.

마.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제3기(21년도) 정기주총	-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205,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205,000	-
	-	-	-

주) 당사의 공모전주주(발기인인 대원, 대신증권 및 에스티캐피탈, 마이퍼스트에셋)는 주주 등간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전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미래에셋증권(주)	최대주주	보통주	0	0	230,000	4.42	-
계		보통주	0	0	230,000	4.42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미래에셋증권(주)
- 대표자 : 최현만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 업종 : 증권 중개업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미래에셋증권(주)	-	최현만	0.05	-	-	미래에셋캐피탈(주)	25.24
		-	-	-	-	-	-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미래에셋증권(주)
자산총계	84,024,164
부채총계	74,442,520
자본총계	9,581,645
매출액	11,812,883

영업이익	1,558,737
당기순이익	825,165

주) 2021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4)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함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함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미래에셋캐피탈(주)	25	이만희	-	-	-	박현주	34.32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미래에셋캐피탈(주)
자산총계	5,832,880
부채총계	4,794,875
자본총계	1,038,005
매출액	262,222
영업이익	92,322
당기순이익	60,399

주) 2020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3.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9년 07월 24일	(주)대원	200,000	97.56	발기주주	공모 전
2019년 10월 14일	신한금융투자(주)	212,292	4.08	공모 후 지분율 변동	공모 후
2020년 12월 31일	메리츠증권(주)	242,833	4.67	-	-
2021년 12월 31일	미래에셋증권(주)	230,000	4.42	-	-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 분	주 주			소 유 주 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963	981	98.17	3,585,114	5,205,000	68.88	-

5. 주식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정관에 규정된 신주 인수권의 내용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최초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에 필요한 긴급한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없음	공고게재신문	한국경제신문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공고게재신문	한국경제신문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의 월별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구분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7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주가	최 고	2,170	2,145	2,125	2,160	2,370	2,680	2,470	-	-	-	2,430	2,280
	최 저	2,065	2,065	2,070	2,080	2,105	2,110	2,160	-	-	-	2,265	2,110
	평 균	2,112	2,106	2,102	2,120	2,162	2,158	2,249	-	-	-	2,307	2,151
거래량	일 최고	15,302	14,423	34,579	20,005	337,708	1,544,885	95,466	-	-	-	1,226,985	359,366
	일 최저	736	184	427	0	511	1,874	6,977	-	-	-	0	12,030
	평 균	7,996	5,495	7,910	4,481	34,387	105,270	41,686	-	-	-	514,650	93,370

주) 당사는 SPAC합병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인 2021년 7월 20일부터 승인일인 2021년 11월 25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되었고, 2021년 11월 26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박규상	남	1965.01	대표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경영총괄	89.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08.05 교보증권 법인영업부장 08.05~10.03 대신증권 법인영업이사 10.04~11.02 대신증권 출세일영업본부장 11.03~13.12 대신증권 출세일영업상무 14.01~18.03 대신증권 영업부 및 마이스터장실 총괄 담당	-	-	-	2년 5개월	2022.07.24
윤종혁	남	1981.01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05.02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07.08~현재 대신증권 IPO2 본부장	-	-	-	2년 5개월	2022.07.24
고재철	남	1972.03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합병자문	99.02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01.09~05.08 삼일회계법인 05.09~현재 대주회계법인 전무이사 16.02~현재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	-	-	-	2년 5개월	2022.07.24
서보민	남	1982.04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08.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07.09 제42회 한국공인회계사 합격 07.12~12.08 삼정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12.09~15.03 삼성증권 IB본부 과장 15.04~현재 회계법인 원지 이사 15.10~현재 경기도 빙상연맹 감사 18.08~현재 SK4호스팩 감사	-	-	-	2년 5개월	2022.07.24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임원	M&A 관련경력
박규상	- M&A 및 IPO 관련 이력 없음
윤종혁	- 19년 대신스팩5호와 지니텍스 합병 - 18년 애경산업, 아주아이비투자 IPO - 16년 동양파일, 오션브릿지 IPO - 15년 싸이맥스 IPO

고재철	- 19년 오켈케이 매각자문 - 12년 삼원산업사 매각자문 - 10년 해피니스CC인수 DD자문 - 07년 OPM (멕시코) M&A DD 및 자문 - 06년 (주)프로셀 상장사 투자유치 자문용역 - 06년 (주)호원 등 다수 합병 및 분할 용역 - 05년 송정신일신탁 등 신행중앙회 청산용역 - 05년 부국철강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자문
서보민	- 17년 유안타제1호스팩 합병 회계자문 - 16년 대신밸런스제1호스팩 합병 회계자문 - 16년 이강에류(주) 합병 회계자문 - 15년 셀잇 인수 회계자문 - 15년 탕그램디자인연구소 인수 회계자문 - 15년 카닥 인수 회계자문 - 15년 밸류포션 인수 회계자문 - 15년 하시스 인수 회계자문 - 15년 바우드 인수 회계자문 - 15년 셀피쉬 인수 회계자문 - 15년 미래에셋생명보험 IPO자문 - 15년 로지시스 IPO자문 - 14년 슈퍼켄코리아 IPO 자문 - 14년 BGF리테일 IPO 자문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해당여부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x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x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1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x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x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당사의 임원중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내역은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겸직 현황

임원 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소속회사 보유주식수 (지분율)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박규상	-	-	-	-	-	-	-	-
윤종혁	대신증권(주)	증권 중개업	본부장	IPO, 지배구조개선	07.08~현재	-	-	-
고재철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업	전무	감사 및 회계자문	05.09~현재	-	-	-
	양주역세권개발 피에프브이(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감사	감사	16.02~현재	-	-	-
서보민	회계법인 원지	공인회계사업	이사	감사 및 회계자문	14.03~현재	50주(0.1%)	-	-
	경기도방상연맹	감사	감사	감사	14.10~현재	-	-	
	SK4호스팩	감사	감사	감사	18.08~현재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대표이사 박규상을 제외하고, 모두 타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 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박규상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당사 임원 중 일부는 당사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들의 임직원으로서 당사의 향후 합병 성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남	여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여	1	-	-	-	1	2년 5개월	-	-	-	-	-	
합 계		1	-	-	-	1	2년 5개월	-	-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30,000,000	-
감사	1	10,0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9,200,000	4,800,000	-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비고
-----	-----	------	-----	----

			평균보수액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2,000,000	6,000,00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3,600,000	3,6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3,600,000	3,600,0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계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계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계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당사는 2021년 7월 20일 합병 결정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을 위한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2021년 11월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합병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2022년 2월 17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여 주식회사 누보와의 합병이 종료되었습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21.07.20	회사합병 결정	최초 제출	-
2021.10.13	회사합병 결정	기재 정정	-
2021.11.29	회사합병 결정	기재 정정	-
2021.12.06	회사합병 결정	기재 정정	-
2021.12.15	회사합병 결정	기재 정정	-
2021.12.20	회사합병 결정	기재 정정	2022.02.17 합병 종료

(2) 증권신고서[합병] 공시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21.11.29	합병	최초 제출	-
2021.12.06	합병	기재 정정	-
2021.12.15	합병	기재 정정	-
2021.12.20	합병	기재 정정	-
2021.12.21	합병	기재 정정	-
2022.02.17	합병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2.02.17 합병 종료

(3) 투자설명서[합병] 공시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21.12.30	합병	최초 제출	2022.02.17 합병 종료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사	일자	안건	가결여부
----	----	----	------

1	2019.07.29	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보수규정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	2020.03.17	1. 제1기(2019.09.16~2019.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3	2021.03.23	1. 제2기(2020.01.01~2020.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다. 채무보증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 준	충족 여부		세부 내역
	충 족	미충족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신탁할 것	○	-	주1)
②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	주2)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	대신증권 2021년 12월 기준 자기자본 26,532억원 주3)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	주4)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	주5)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	주6)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	주7)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	주8)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	공모금액 100억원 완료시 대 신증권(주) 8.62% (충족가능)

주1) 당사 정관에 기재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주2) 당사 정관에 기재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3) 발기인 내역

(단위 : 주, %)

주주명	보통주		전환가능주식수		합계		비고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대원	200,000	97.56	-	-	200,000	12.50	발기인, 최대주주
대신증권(주)	5,000	2.44	995,000	71.32	1,000,000	62.50	발기인, 투자매매업자
에스티캐피탈(주)	-	-	200,000	14.34	200,000	12.50	발기인, 전문투자자
(주)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	-	200,000	14.34	200,000	12.50	발기인, 전문투자자
합 계	205,000	100.00	1,395,000	100.00	1,600,000	100.00	-

주4)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당사 임원 4인 모두(박규상, 윤종혁, 고재철, 서보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59조 (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또는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주6)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59조 (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또는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7) 당사는 정관 제58조 제2항에 의거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2항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8) 당사 정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60조 (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 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 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은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대신증권(주)는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의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신증권(주)는 향후 대표주관회사로서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 대상회사의 탐색 및 합병실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말 현재 대신증권(주)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주)는 동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주당 발행가 2,000원으로 5,000,000주를 발행하여 총 100억원을 공모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대신증권(주)가 소유한 주식등의 발행금액(1,000백만원 : 주식 5백만원 + 전환사채 995백만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11,600백만원 : 공모전 주식 205백만원 + 전환사채 1,395백만원 + 공모주식 10,000백만원)의 8.62%를 차지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게 됩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A지주회사	B법인	C법인	D법인	...	연결조정	연결 후 금액
매출액						()	
내부 매출액	()	()	()	()	()		-
순 매출액						-	
영업손익						()	
계속사업손익						()	
당기순손익						()	
자산총액						()	
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부채총액						()	
자기자본						()	
자본금						()	
감사인						-	
감사·검토 의견						-	
비 고							

나. 합병 등의 사후 정보

당사는 2021년 7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주)누보와의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1년 11월 25일 상장예비심사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합병은 회사가 주식회사 누보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당사가 존속하고 주식회사 누보가 소멸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누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합병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결의일	2021년 07월 20일
합병계약일	2021년 07월 20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1년 11월 29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21년 12월 14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21년 12월 15일
	2021년 12월 23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21년 12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21년 12월 30일
	2022년 01월 13일
주주총회일	2022년 01월 1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2년 01월 14일
	2022년 02월 0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2년 01월 15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2년 01월 15일
	2022년 02월 15일
합병기일	2022년 02월 16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2년 02월 17일
합병등기에정일	2022년 02월 17일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22년 03월 04일

다.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205,000	2019년 08월 01일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신증권이 소유한주 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205,000
기명식 전환사채	1,395,000	2019년 08월 01일	-	상동 (전환사채 액면가 1,395,000,000원)	상동	5,205,000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 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 자	출자 목적	최초취 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